

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

귀하

| | | | |
|--------|--|-----|--|
| 도로의 종류 | | 노선명 | |
| 부담대상 | | 위치 | |
| 부담금액 | | | |
| 기간 | | | |
| 이유 | | | |

「도로법」 제87조제1항·제8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.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

직인

첨부서류

설계도서